



2005. 9.

- 제1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
의 원 발 의 의 안

계룡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

계 룡 시 의 회

의안 목록

□ 조례안(2건)

순번	입법 구분	건명	비고 (page)
		총 2 건	
1	제정	계룡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2	개정	계룡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계룡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225
----------	-----

발의년월일 : 2005. 8. 23.

발 의 자 : 정형식의원외 2인

1. 제정이유

계룡시의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실·과장 3명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과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 나.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1건당 2,000만원이상의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안 제4조)
- 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
- 바. 그밖에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내지 제13조).

계룡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사무 중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실과장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과 각종 용역과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되, 의회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1건당 2,000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정하여 집회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①위원장은 매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승인요구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